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이연희 · 이해식
허영 · 김준혁 · 진성준
강득구 · 최혁진 · 차지호
민병덕 · 윤후덕 · 안태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(이하 “총배분비율”)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,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

항).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분의 35는”을 “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자금소요”를 “자금소요, 여유자금운용 현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권기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 ① -----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자금소요, 여유자금운용 현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